

의안번호	2202624
의 퇴 인	박용갑 의원
회 답 일	2024. 10. 29.
추 계 번호	24A2680

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
1	안 제16조의2(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안전조치)	·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의 옥내에 전기자동차(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말한다)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소화수조·방화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함(제1항) ·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공사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하여야 함(제2항) ·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과 소방시설의 현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(제3항) ·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주기·대상·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(제4항)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16조의2(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안전조치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□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안전조치(안 제16조의2)

- 개정안은 옥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자로 하여금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,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로 하여금 옥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과 소방시설의 현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

- 먼저,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정기점검의 경우 현재 「전기안전법」 제 11조 및 제12조¹⁾에 따라 정기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음
 - －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2024년 7월 말 기준으로 전국에 총 368,056기가 설치되어 있으며, 이 중 급속 충전기는 42,518기, 완속 충전기는 325,538기임
 - － 다만,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,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옥내·외 설치 여부에 대해서는 정확한 통계자료가 미비한 상황임

[표 1]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현황

(단위: 기)

구분	공공	민간	합계
급속(기)	14,301	28,217	42,518
완속(기)	7,008	279,142	286,150
콘센트형	—	39,388	39,388
합계	21,309	346,747	368,056

자료: 환경부

- 다음으로,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로 하여금 옥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과 소방시설의 현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, 개정안의 소방시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실태조사의 주기·대상·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는데 한계가 있음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1) 「전기안전관리법」 제11조(정기검사) ①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전기설비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로부터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.

제12조(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)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일반용전기설비가 「전기사업법」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(이하 “기술기준”이라 한다)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기설비의 사용 전과 사용 중에 정기적으로 안전공사로 하여금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주거용 시설물에 설치된 일반용전기설비를 정기적으로 점검(이하 “정기점검”이라 한다)하는 경우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점검의 승낙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I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추계세제총괄과	윤주철	권아영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윤주철	02-6788-4655	yjc@nabo.go.kr